

단체교섭 요구사실 및 교섭참여 공고(수정)

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」 시행령 제14조의3 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합니다.

□ 교섭요구 사실

-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 명칭 : 안동시설공단노동조합
- 대표자 : 권 창 석
- 교섭 요구일자 : 2020. 1. 13(월)

□ 수정사유

- 공고 당일 초일불산입 미산정 사유로 공고기간 수정
 - 관련근거 : 민법 제157조 기간을 일, 주,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.
- 수정내용 : 공고기간(1.14~1.20)을 (1.14~1.21)까지 수정 공고

□ 교섭참여

- 다른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 : 2020. 1. 14 ~ 1. 21
- 참여방법
 - 단체교섭요구서(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등에 관한 시행규칙(별지 제2호서식))
- 교섭요구 시 서면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
 - 노동조합 명칭 및 대표자 성명
 - 사무소가 있는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
 -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조합원 수
- 제출방법 : 직접제출, 우편제출, FAX제출(우편의 경우 당일 도달 기준)
- 제출처 : 안동시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실
 - 우편 : 안동시 육사로 203(운흥동)
 - FAX : 054-859-6961

※ 문의처 : 안동시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실 노무담당(054-850-4514)

2020년 1월 21일

안동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

